

4.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律(案)立法豫告

內務部公告 第1995-14號 1995. 6. 28

1. 제정취지

노후·불량한 농어촌주택의 현대화사업을 촉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100m²이내에서 농어촌주택을 개축하거나 재축·신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용자금을 지원토록 함. 다만, 수도권지역에서는 당해 지역을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00m²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재축할 때에 한하여 용자금을 지원함.
- 나.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도시지역 거주주민과 농어촌지역의 주민은 농어촌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내무부장관은 농어촌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, 농진공등을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재성능검사, 시공감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세대원의 전부가 1년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비워두는 건축물을 공가로 정의하고 시장·군수가 공가에 대한 철거·개축·수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미이행시는 이를 시장·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·군수외의 농어촌진흥공사,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

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, 농어촌주택조합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(참조 : 지역개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와 전화번호
- 다. 기타 관련사항

4. 기타

자세한 내용등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내무부 지역개발과(전화 731-2270)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